

제주지방법원 2021. 12. 17 선고 2020가단4712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제주특별자치도

소송대리인 B, C, D, E, F, G

H

변 론 종 결 2021. 10. 22.

판 결 선 고 2021. 12. 1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3,150,360원과 이에 대하여 2020. 8. 5.부터 2021. 12. 17.까지는 연 5%, 그 다음 날부터 다
값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
나. 2020. 7. 28.부터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점유 종료일까지 매년 813,160원의 비율로 계산한
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50%는 원고가, 50%는 피고가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, 1) 10,968,18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값는

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 2)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년 2,456,6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.

이 유

갑1부터 3호증, 을1,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, 감정인 I의 임료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원고는 1999. 8. 1.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(이하 ‘이 사건 각 토지’라고 한다)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, 이 사건 각 토지는 1967년경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다가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피고가 도로의 형태를 갖추기 위한 공사를 한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점유, 관리하여 온 사실,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도로로 평가한 임료는 2015. 7. 28.부터 2020. 7. 27.까지 합계 3,150,360원, 2020. 7. 28. 무렵에는 매년 813,160원¹⁾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으로서 1) 2015. 7. 28.부터 2020. 7. 27.까지 발생한 3,150,36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20. 8. 5.부터 피고가 아래와 같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므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. 12. 17.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, 2) 2020. 7. 28.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도로로 평가한 임료는 매년 813,160원일 것으로 추인되므로, 2020. 7. 28.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를 종료할 때까지 매년 813,1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‘전’임을 기준으로 평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나,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에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 상황에 따라

감정평가 하여야 하지만,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의 형태를 갖추기 위한 공사를 한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므로(대법원 2001. 1. 19. 선고 2000다58576, 58583 판결 등 참조),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한편 피고는, 1967년 무렵부터 도로가 개설된 이 사건 각 토지는 토지 소유자가 마을주민들을 위하여 무상 제공한 것으로 이후 아무런 제한 없이 일반 공중의 교통 또는 통행에 제공되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도록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, 피고가 이를 도로로 점유관리하고 있더라도 원고에게 어떠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,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.

그러나 이 사건 각 토지가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전 소유자나 원고가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타당하므로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.

판사 송현경

1) =(31,100원+266,620원+88,870원+266,620원+71,090원+31,100원+57,760원)